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1.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22일, 이성윤의원 등 39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1. 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안조위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6. 1. 12.)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1. 12.) 상정, 안조위심사보고, 찬반토
론, 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성윤의원)

2025년 6월 5일,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

써 전 정권이 자행한 권력형 비리와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수사할 “3대 특검”이 출범하였음.

3대 특검은 법정 수사기간 동안 소기의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법원과 검찰의 연이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풀려났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했고, 불법계엄 당시 헌법수호의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국무위원들이 보인 국민들에 민망한 행태 역시도 만천하에 드러났음. 아울러 선거개입이 민간인을 매개로 한 수준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와의 반헌법적 정교유착에서 비롯되었음을 파헤친 것은 물론, ‘VIP 격노설’을 정조준해 순직해병사건 수사 외압 과정의 전모와 그 배후를 규명하는 등 각각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음. 다만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음.

약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행위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될 최우선과제임.

이에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행위 수사의 소명을 부여하고자 함. 국민이 부여한 국정운영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였던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광범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협의를 중단없이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병섭)

- 이른바 “3대 특검법”이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후, 같은 해 9월 26일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의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수사 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 수사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국정·인사 개입 등 기존 내란·외환특검과 김건희특검의 수사대상을 규정한 외에, 국가기관·지자체의 비상계엄 동조·후속조치 지시 등 기존 특검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함.

-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보 5인, 파견검사 30인, 특별수사관 50인, 파견공무원 70인으로, 이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보다 크나 3대 특검법에 따른 조직규모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사대상 및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음.

준비기간을 제외한 원칙적 수사기간은 90일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을,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재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법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 의해 공소유지 중인 경우는 해당 특별검사가 계속하여 공소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간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과 2027년 총 154억 3,100만원으로 추계됨.

4. 대체토론의 요지

- (서영교 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특검에서 기소하였고 100만원 이상 선고되는 경우 당선 무효가 됨. 대선 토론때 주가조작으로 손해만 봤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특검에서

는 이 사안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음. 특수본에서 수사하고 있으나 이를 수사하여 기소하여야 함. 장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음. 이를 모두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여 당선 무효시킬 필요 있음. 비상계엄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외환에 대한 내용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명태군 여론 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도 수사가 미진함.

- (전현희 위원) 외환유치, 노상원 수첩의 실체 및 의미, 대통령 관저 이전, 창원산단 지정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실체 규명 필요. 특검으로 인한 비용보다는 국가 회복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임.
- (나경원 위원)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곧 나올 예정이고 특검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음.
- (최혁진 위원) 수사 대상에 김건희의 계부로 알려진 김충식을 추가하고,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의혹도 추가할 필요 있음. 김충식의 국정농단 의혹이 계속하여 밝혀지고 있음. 통일교와 김충식을 통하여 DMZ 평화공원조성 사업 추진 등의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 필요.
- (김기표 위원) 특검이 끝나더라도 국수본으로 사건이 이첩되어

계속 수사가 유지되는 것이고 이를 특검으로 하겠다는 것임. 3대 특검에 대한 마무리를 위하여 후속 특검 필요

- (주진우 위원) 검찰의 미제 사건이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는 50% 상승함.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 중 많은 인원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아 수사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또 특검에 파견할 경우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임.
- (장경태 위원) 내란 특검에 준하여 특검의 규모를 유지할 필요
- (곽규택 위원) 3개 특검을 통하여 마무리 못한 것이 있다면 국수본에서 수사를 계속 하면 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특검은 반대
- (박은정 위원)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중에서 대부분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추가 수사 필요

5. 찬반토론의 요지

- (김기표 위원) 수사대상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통일교 등 특검법과 중복되는 수사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파견검사가 특검·특검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의 감면 규정할 필요

- (김용민 위원) 공수처에서 의무적으로 2명 이상 파견하도록 하는 내용 삭제 필요하고, 3대 특검에서 파견된 특별수사관이 제정안에 따른 특별수사관의 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수정하며, 수사 미완료·공소제기 여부 미결정 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하도록 하고, 재판 중계 시 비식별조치 및 관계 공무원의 면책 규정 마련 필요
- (곽규택 위원) 개별 특검법에 따라 수사 미완료된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또다시 2차 특검법을 제정하여 특별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함.
- (주진우 위원) 수사 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건을 수사하자는 의미와 같음. 파견검사의 수를 줄이면서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조직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음.
- (박은정 위원) 특별검사의 조직규모를 조정할 필요

6. 안전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지원)

안전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함.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과 2027년 총 154억 3,100만원으로 추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안 제9조(수사기간 등),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안 제13조(보수 등)	인건비	4,049	1,464	5,513
	운영비	5,455	911	6,366
	시설비	771	—	771
	사무실 임차	2,236	545	2,781
	합계	12,511	2,920	15,431

주: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6년과 2027년으로 하고, 수사기간 특별수사관 및 과건인력 규모를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수사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제4항(특별검사의 임명)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제4항(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70명 이내로 함	재량규정
3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5일 이내에 5명 이내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4	안 제9조(수사기간 등)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제3항)	재량규정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5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제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의 경우에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13조(보수 등)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	—
2	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	—
3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
4	안 제9조(수사기간 등)	○	—
5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	—
6	안 제13조(보수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함) 임명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사무실 임차료로 나뉘고, 운영규모가 수사기간과 기소 후 공소유지기간 간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추계
- 특별검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김건희 특검법」이라 함)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이하 “김건희 특검”이라 함)의 직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참고
 - 특별검사등의 처우 및 활동기간 등을 「김건희 특검법」(제정 기준)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 제정안과 「김건희 특검법」 비교

구 분	제정안	「김건희 특검법」
특별검사등의 대우 및 보수 수준	특별검사: 고등검사장 수준 특별검사보: 검사장 수준 특별수사관: 3급~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수준	좌동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인원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최대 50명	특별검사보: 최대 4명 특별수사관: 최대 80명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의 수	파견검사: 최대 30명 파견공무원: 최대 70명	파견검사: 최대 40명 파견공무원: 최대 80명
수사기간	170일 이내	좌동
공소유지기간	12개월 이내	좌동

- 수사기간에 특별검사보는 5명, 특별수사관은 3급 수사관 50명이 임명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공소유지기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 및 직급 구성은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사례를 참고
 -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특별수사관을 정원의 일부만 임명하고, 기타직을 수사인력 보조 등을 위하여 추가 채용하여 운용¹⁾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라 임명될 특별수사관의 직급과 기타직 수 등을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수사기간에 기타직 없이 모두 특별수사관(3급)을 정원에 따른 최대인원(50명)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가정
 - 공소유지기간의 인력 규모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기소 건수와 피고인 수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여, 수사 인력의 2분의 1 수준(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25명)으로 유지한다고 가정
- 파견인원은 최대인원인 100명으로 가정
 - 제정안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는 30명 이내, 공무원은 70명 이내에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간에 최대인원인 검사 30명, 공무원 70명을 파견한다고 가정. 다만, 공소유지기간 파견인력은 21명으로 가정
 -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²⁾
-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경비 등에 대한 단가는 김건희 특검의 집행내역³⁾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⁴⁾ 및 소비자물가상승

1)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특별수사관 정원은 최대 80명이나, 실제 수사기간에 임명한 특별수사관은 최대 46명이고, 기타직은 최대 23명을 채용하였음(자료: 법무부)

2) 파견인원의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를5)을 각각 반영하여 산정

- 특별검사에게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
-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은 200일(2025.6.12.~ 2025.12.28.)이고, 운영비와 시설비 모두 이 기간에 지출된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
- 다만,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되어 공소유지기간이 최근 개시되어 참고할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소유지기간 중 운영비 단가는 수사기간의 60% 수준으로 가정
- 시설비 단가는 수사기간과 공소유지기간 동일하다고 보고, 모두 2026년에 발생한다고 가정

□ 수사기간은 170일, 공소유지기간은 12개월로 가정

- 현 시점에서 실제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은 각각 최장 기간(170일, 12개월)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이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으로 함

- 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수사준비를 시작하여 2026년 6월까지 총 170일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은 공소유지기간으로 가정

3) 김건희 특검 관련 경비 집행 내역: 2025년

(단위: 백만원)

	수사기간(준비기간 포함 200일) (2025.6.12.~ 2025.12.28.)	공소유지기간 (2025.12.29. ~)
직무활동 운영비 ¹⁾	5,891	
시설비 ²⁾	595	

주: 1. 수사기간 활동인원은 평균 185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39명, 기타직 21명, 파견인력 119명)이었음

2. 운영비는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경비를 합산하여 산출한 것임

3. 시설비는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 네트워크 공사, CCTV 설치공사 등

자료: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2025.9.3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	3.0%	2.4%	2.4%	2.4%	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소비자물가상승률(2025.9.3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 수사기간(170일) 및 공소유지기간(12개월) 동안 소요되는 특별검사등의 인건비는 3대 특검(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의 기준 보수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표 3] 3대 특검 직급별 기준 보수액(2025년 기준)

(단위: 원)

직급	월 평균 보수
특별검사	12,122,000
특별검사보	10,925,000
특별수사관(3급)	7,126,000

자료: 3대 특별검사 사무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5년 기준 보수액에 공무원임금 상승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간(170일) 및 공소유지기간(12개월)에 해당하는 인건비 소요액은 다음의 표와 같이 추계

[표 4] 수사기간에 소요되는 특별검사등의 인건비 추정: 2026년

구분	2026			
	1인당 월 보수액 (A, 백만원)	인원 (B, 명)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특별검사	12.4	1	5.7	71
특별검사보	11.2	5	5.7	319
특별수사관(3급)	7.3	50	5.7	2,080
합계	-	56	-	2,47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3대 특별검사 사무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5] 공소유지기간에 소요되는 특별검사등의 인건비 추정: 2026~2027년

구분	2026				2027				재정소요 합계 (D+H, 백만원)
	1인당 월 보수액 (A, 백만원)	인원 (B, 명)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1인당 월 보수액 (E, 백만원)	인원 (F, 명)	기간 (G, 개월)	재정소요 (H=E×F×G, 백만원)	
특별검사	12.4	1	6.3	78	12.7	1	5.7	72	151
특별검사보	11.2	5	6.3	352	11.5	5	5.7	326	679
특별수사관(3급)	7.3	25	6.3	1,149	7.5	25	5.7	1,065	2,214
합계	—	31	—	1,579	—	31	—	1,463	3,044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3대 특별검사 사무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는 총 55억 1,300만원으로 추계

[표 6]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에 소요되는 인건비 추정: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수사기간	공소유지기간	공소유지기간	
인건비	2,470	1,579	1,464	5,513

나. 운영비

- 특별검사의 운영비는 수사기간의 경우 김건희 특검의 운영비 단가를 적용하고, 공소유지기간의 경우 수사기간 운영비 단가의 60%를 적용하여 추계
- 수사기간 운영비는 총 44억 6,7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6.7개월) 직무활동 운영비 1인당 단가⁶⁾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제정안에 따른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⁷⁾를 적용
- 공소유지기간 운영비는 총 18억 9,9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운영비 1인당 단가의 60%를 적용한 단가(2025년 3백만원)에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 수⁸⁾를 적용

6) 수사기간의 직무활동 운영비(58억 9,100만원)를 개월 수(6.7개월)와 활동인원(평균 164명)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7) 총 156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인력 100명)

□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소요되는 운영비는 총 63억 6,600만원으로 추계

[표 7] 제정안에 따른 운영비 추정: 2026~2027년

구분		2026				2027				재정소요 합계 (D+H, 백만원)
		1인당 재정소요 (A, 백만원)	인원 (B, 명)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1인당 재정소요 (E, 백만원)	인원 (F, 명)	기간 (G, 개월)	재정소요 (H=E×F×G, 백만원)	
운영비	수사기간	5.0	156	5.7	4,467	5.1	-	-	-	4,467
	공소유지기간	3.0	52	6.3	987	3.1	52	5.7	911	1,899
합계		-	-	-	5,454	-	-	-	911	6,366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 시설비

□ 시설비는 김건희 특검의 시설비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 시설비는 수사기간과 공소유지기간 모두 2026년에 발생한다고 가정

□ 수사기간 시설비는 총 5억 7,8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에 사용한 시설비 1인당 단가⁹⁾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를 적용

□ 공소유지기간 시설비는 총 1억 9,3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에 사용한 시설비 단가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 수를 적용

□ 시설비 총액은 다음의 표와 같이 7억 7,100만원으로 추계

8) 총 52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25명, 파견인력 21명)

9) 수사기간의 시설비(5억 9,528만원)를 활동인원(평균 164명)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표 8] 제정안에 따른 시설비 추정: 2026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6		
		1인당 재정소요 (A, 백만원)	인원 (B, 명)	재정소요 (C=A×B, 백만원)
시설비	수사기간	3.7	156	578
	공소유지기간	3.7	52	193
합계		—	—	771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라. 사무실 임차

- 사무실 임차료는 수사기간의 경우 김건희 특검의 1인당 면적에 활동인원 수와 서울 도심지역 임대료 단가(2025년 3분기 월 31,000원/㎡)¹⁰⁾를 각각 반영하여 추계. 관리비는 임대료의 50%(2025년 3분기 월 15,500원/㎡)로 가정함
- 수사기간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포함)는 총 16억 3,4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1인당 면적(39.5㎡)¹¹⁾에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156명)를 적용하여 사무실 임차면적(6,164㎡) 산출한 후, 임대료 단가와 관리비 단가를 각각 곱하여 산출
- 공소유지기간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포함)는 총 11억 4,700만원으로 추계
 -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1인당 면적(39.5㎡)에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 수(52명)를 적용하여 사무실 임차면적(2,055㎡) 산출한 후, 임대료 단가와 관리비 단가를 각각 곱하여 산출
- 사무실 임차료 총액은 다음의 표와 같이 27억 8,100만원으로 추계

10)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2025.10.30. 등록)

11) 수사기간의 사무실 임대면적(6,480㎡)를 활동인원(평균 164명)으로 나누어 산출함

[표 9] 제정안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포함) 추정: 2026~2027년

구분		2026				2027				재정소요 합계 (D+H, 백만원)
		임차면적 (A, m ²)	단가 (B, 천원)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임차면적 (E, m ²)	단가 (F, 천원)	기간 (G 개월)	재정소요 (H=E×F×G 백만원)	
사무실 임차	수사기간	6,164	46.5	5.7	1,634	-	-	-	-	1,634
	공소유지기간	2,055	46.5	6.3	602	2,055	46.5	5.7	545	1,147
합계		-	-	-	2,236	-	-	-	545	2,781

주: 단가는 임대료(월 31,000원)와 관리비(월 15,500원)를 합산한 것임
자료: 김건희 특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마.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154억 3,100만원으로 추계

[표 10]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안 제9조(수사기간 등),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안 제13조(보수 등)	인건비	4,049	1,464	5,513
	운영비	5,455	911	6,366
	시설비	771	-	771
	사무실 임차	2,236	545	2,781
	합계	12,511	2,920	15,431

주: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6년과 2027년으로 하고, 수사기간 특별수사관 및 과견인력 규모를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수사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6년과 2027년으로 하고, 수사기간 특별수사관 및 과견인력 규모를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수사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

라질 수 있음

[붙임]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1.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수사대상을 추가하고, 통일교 등 정치권 유착 및 금품수수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세 건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수사대상을 삭제하며,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을 신설하고 수사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등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일명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등 수사대상을 신설하고, 통일교 등 정치권 유착 및 금품수수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세 건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수사 대상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수사대상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
-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2명 이상 파견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제6항 삭제)
- 다.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30

명 이내로 하고, 특별수사관의 수는 100명 이내로 수정함(안 제6조 제5항 및 제8조제3항 본문)

라.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을 신설함(안 제7조 신설)

마. 파견검사가 특별검사·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재정 없이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바.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10조제6항 전단)

사. 재판 중계 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수정함(안 제11조제6항 신설)

아. 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부칙을 신설함(안 부칙 제5조 신설)

윤석열 · 김건희에 의한 내란 ·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윤석열 · 김건희에 의한 내란 ·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제2호 중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를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로, “비행”을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 · 확성기 · 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으로, “등으로”를 “등”으로, “군사반란을”을 “군사반란 등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지방자치단체 · 군(각급 부대) 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 · 외환 등”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혐의와 관련하여,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유효하게 지속될 경우를 전제로 ‘수거대상 처리방안’ · ‘국가비상입법기구 창설계획’ 등 일명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실행하고자 구체적인 기획 · 준비에 나아갔다는”을 “혐의 사건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5호) 중 “운영,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거래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가성 동원 등”을 “운영 등”으로, “등에 위반되는”을 “등을 위반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8호) 중 “변경”을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9호) 중 “김정환”을 “김장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0호) 중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본인 등”을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으로, “사건에 관하여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박성재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김명수”를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으로, “타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를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까지의”를 “제14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2호까지의”를 “제15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까지의”를 “제16호까지의”로 한다.

가.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나. 국군방첩사령부의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혐의 사건

다.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준비 및 실행문건 계획 혐의 사건

라. 수도방위사령부 ‘수호신TF’, 정보사령부 ‘수사2단’ 등 군(각급 부대) 내 계엄대비 불법 비밀조직 구성 혐의 사건

5. 일명 노상원 수첩·이동식저장장치(USB)·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준비·실행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각급 부대)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안 제3조제3항 전단 중 “사람을”을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7조에”를 “제8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0명”을 “15명으로”, “70명”을 “1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안 제7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 제1항 중 “사람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대통령은”을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7조) 제3항 중 “50명”을 “100명”으로, “임명하거나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을 “임명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제9조제3항부터”를 “제10조제3항부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에”를 “제13조에”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6항 전단 중 “사건을”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7조를”을 “제18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을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11조를”을 “제12조를”로 하며,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3항 중 “제57조에도”를 “제57조제1항 단서에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제3항 중 “제9조의”를 “제10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1조에”를 “제12조에”로 하며, 제16조(중전의 제15조) 제1항제2호 중 “제7조제6항에”를 “제8조제6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제5항에”를 “제9조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14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7조제1항에”를 “제8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조제6항에”를 “제8조제6항에”로 하며, 제24조(중전의 제23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을”을 “제9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2항을”을 “제9조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제3항을”을 “제9조제3항을”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본문 중 “제14조제4항에”를 “제15조제4항에”로 하며, 부칙 같은 조 단서 중 “제9조제8항은”을 “제10조제8항은”으로 한다.

안 부칙 제3조 중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

안 부칙 제4조 중 “제9조의”를 “제10조의”로 한다.

안 부칙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

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 ----- ----- -----.
1. (생 략)	1. (원안과 같음)
2. <u>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u>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 L) 위협 <u>비행</u>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u>으로</u> 외환·군사반란을 시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u>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u> <u>12월 3일까지</u> ----- ----- ----- <u>비</u> <u>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u> <u>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u> <u>성기·전단살포기구 등을 이</u> <u>용한 대북심리전</u> ----- ----- ----- <u>등</u> ----- <u>군사반란 등을</u> -----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 · 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 하여, 국가기관· <u>지방자치단</u> <u>체가</u> 12·3 비상계엄에 동조 하거나 12·3 비상계엄 선포 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	3. ----- ----- ----- <u>지방자치단체·</u> <u>군(각급 부대) 등이</u> ----- ----- -----

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위법
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
· 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
하여,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유효하게 지속될 경우를 전제
로 ‘수거대상 처리방안’·‘국
가비상입법기구 창설계획’ 등
일명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실행하고자 구체적인
기획·준비에 나아갔다는 범
죄 혐의 사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혐의 사건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가.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
기관에 의한 전·현직 군
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나. 국군방첩사령부의 부정선
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
비 혐의 사건

다.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
료’ 등 계엄 준비 및 실행
문건 계획 혐의 사건

라. 수도방위사령부 ‘수호신T

<신 설>

<신 설>

<신 설>

F', 정보사령부 '수사2단'
등 군(각급 부대) 내 계엄
대비 불법 비밀조직 구성
혐의 사건

5. 일명 노상원 수첩·이동식저
장장치(USB)·개인용 컴퓨터
(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등
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
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
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
죄 혐의 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
전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
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
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준비
·실행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
건

7.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각급 부대) 추가 출동 가
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

5.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이하 각 “윤석열”, “김건희”라 한다)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 운영,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거래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가성 동원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6.·7. (생략)

8.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

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

---운영 등-----
-----등을 위반하는-----

9.·10. (원안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11. -----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
특혜 의혹-----

지(창원산단) 지정과정에 부
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
의 사건

9. 김건희가 명태균·전성배(건
진법사)·이종호·김정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조
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
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
으로 국정·인사에 개입하였
다는 범죄 혐의 사건

10.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본
인 등 관련 사건에 관하여 수
사상황을 보고받고 박성재에
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김명수 등 타인의 사건에 관
하여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
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
거나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
건

11. (생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

12. -----
-----김장환-----

13.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
는 타인의 사건-----수사상
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
·증거은닉----적법절차의 위
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
을 오남용하게-----

14. (원안 제11호와 같음)

15. -----제14호까지의---

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
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
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
건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
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 ③ (생략)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
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
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을
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16. -----제15호까지의---

17. -----제16호까지의---

② · ③ (원안과 같음)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사람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
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④ · ⑤ (생략)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 ④ (생략)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70명 이내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를 합산한다) 중에서-----

-----. <후단 삭제>

④ · ⑤ (원안과 같음)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

-----.

1. (원안과 같음)

2. 제8조에-----

② ~ ④ (원안과 같음)

⑤ -----

-----15명-----

-130명-----

<삭제>

서 2명 이상 파견받도록 하여
야 한다.

⑦ · ⑧ (생 략)

<신 설>

⑥ · ⑦ (원안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
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특
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
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
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
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
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
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
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후단 신설>

① -----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② -----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u>50명</u>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거나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⑥ (생략) <u>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u> ① (생략)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u>제9조제3항부터</u> 제5항까지, <u>제11조</u> 및 <u>제12조</u>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⑤ (생략) <u>제9조(수사기간 등)</u> ① ~ ⑤ (생략)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u>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u> ③ ----- ----- <u>100명</u>----- <u>임명할</u>-----.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⑥ (원안과 같음) <u>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u> ① (원안과 같음) ② ----- ----- ----- -----<u>제10조제3항부터</u>----- -----<u>제12조</u>-----<u>제13조</u>에----- ----- -----. ③ ~ ⑤ (원안과 같음) <u>제10조(수사기간 등)</u> ① ~ ⑤ (원안과 같음) ⑥ ----- -----
---	--

다른 법률에 우선하
여 사건을

제1
8조를

⑦ ----- 따른 사건을 배당받
은-----

⑧ _____

_____.

제12조를

_____.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 ②
(생략)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
결은 공개한다.

④ . ⑤ (생략)

<신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생
략)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생
략)

제13조(보수 등) (생략)

제14조(퇴직 등) ① . ② (생

제11조(재판기간 등)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제57조제1항 단
서에도-----

-----.

④ . ⑤ (원안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
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
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
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
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
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
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건의 처리보고) (원안
제11조와 같음)

제13조(사건의 대국민보고) (원안
제12조와 같음)

제14조(보수 등) (원안 제13조와
같음)

제15조(퇴직 등) ① . ② (원안

략)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생략)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과 같음)

③ -----제10조의-----

·.

④ -----제12조에-----

-----.

제16조(해임 등) ① -----

-----.

1. (원안과 같음)

2. -----
-----제8조제6항에-----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3. 제9조제1항-----

4. 제9조제5항에-----

② -----

-----제15조제2항-----

③ -----

-----제8조제1

항에-----

-----제8조제6항에-----

④ (원안과 같음)

<u>제16조</u> (신분보장) (생략)	<u>제17조</u> (신분보장) (원안 제16조와 같음)
<u>제17조</u> (회계보고 등) (생략)	<u>제18조</u> (회계보고 등) (원안 제17 조와 같음)
<u>제18조</u> (재판권 및 재판관할) (생 략)	<u>제19조</u> (재판권 및 재판관할) (원 안 제18조와 같음)
<u>제19조</u> (이의신청) (생략)	<u>제20조</u> (이의신청) (원안 제19조와 같음)
<u>제20조</u>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생략)	<u>제21조</u>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원안 제20조와 같음)
<u>제21조</u> (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생략)	<u>제22조</u> (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원안 제21조와 같음)
<u>제22조</u> (벌칙) (생략)	<u>제23조</u> (벌칙) (원안 제22조와 같 음)
<u>제23조</u> (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 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 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u>제8 조제1항</u> 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 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 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 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u>제24조</u> (벌칙) ① ----- ----- ----- ----- <u>제9조</u> <u>제1항</u> 을----- ----- ----- ----- -----. ② ----- ----- -----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생략)

제25조(형벌 등의 감면) (생략)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 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8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1조부터

제9조제2항을

③

제9조제3항을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안 제24조와 같음)

제26조(형벌 등의 감면) (원안 제25조와 같음)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제15조 제4항에-----

-----제10조제8항은-----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제22조부터

<u>제25조까지</u> 각 규정의 적용에 따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u>제9조의</u>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u><신 설></u>	<u>제26조까지</u>----- ----- -----.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 -----<u>제10조의</u>----- ----- ----- -----. <u>제5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u> <u>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u>
---	---

윤석열 · 김건희에 의한 내란 ·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 · 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 · 확성기 · 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 · 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 · 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군(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

조하거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범죄 혐의 사건

가.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나. 국군방첩사령부의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혐의 사건

다.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준비 및 실행문건 계획 혐의 사건

라. 수도방위사령부 ‘수호신TF’, 정보사령부 ‘수사2단’ 등 군(각급 부대) 내 계엄대비 불법 비밀조직 구성 혐의 사건

5. 일명 노상원 수첩·이동식저장장치(USB)·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준비·실행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각급 부대)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이하 각 “윤석열”, “김건희”라 한다)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윤석열·김건희·명태균·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범죄 혐의 사건
10.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1.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2. 김건희가 명태균·전성배(건진법사)·이종호·김장환 등 민간인

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3.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4.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으로 국가기밀·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고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

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 특검법”이라 한다)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제외한다.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
적을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
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8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
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
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
별검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

1.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2. 관할 지방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30명 이내로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2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6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8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8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8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0조(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

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및 그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 의하여 공소유지중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검사가 계속하여 공소를 유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 상호 간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등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①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법률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3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 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0조제8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

지 각 규정의 적용에 따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10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